

제 호

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

1. 법인 명칭:

2. 소재지:

3.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
4. 대표자 주소: (전화번호:)

5. 사업 내용:

6. 허가 조건: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국무조정실장 직인

준 수 사 항

1. 「민법」 및 「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.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해야 합니다.
 - 가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 - 나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 - 다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했을 때
 - 나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
 - 다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을 때
 - 라.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
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국무조정실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정 관 변 경 사 항

[illegible]